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2007.10.19. (금) 14:30

충청북도 첨단산업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업경제위원회

충청북도 첨단산업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 이대원 의원외 6인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2007년 10월 4일

나. 회부일자 : 2007년 10월 10일

3. 제안 이유

○ “첨단산업”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산업인 “전략산업”으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전략산업 육성에 따른 인력양성과 과학기술진흥시책 수립·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과학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가. 전략산업 육성과 과학기술 시책을 중시하고 전략산업 및 지역 과학기술 진흥 사업을 적극 추진함을 책임과 의무로 정함(안 제3조).

- 나.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진흥 시책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안 제4조).
- 다. 전략산업 지원사업, 과학기술진흥 사업 및 과학기술 문화 확산 사업에 관한 사항과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5조 내지 제7조).
- 라. 과학기술진흥 사업 및 연구개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연구 개발 지원 전담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8조).
- 마.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지역연구개발 사업외 예산이 수반되는 전략 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안 제9조).
- 바. 위원회 기능 중 인력양성 시책 및 과학기술육성을 위한 사항 추가(안 제11조).
- 사. 위원회 구성 중 부위원장 2인을 두고, 당연직 위원으로 도의 경제 투자본부장으로 하는 사항 추가(안 제12조).
- 아.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진흥 관련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추가 하도록 함(안 제16조).

5. 검토의견

- 충청북도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는 2003년 1월 3일 제정된 후 2006년 1월 13일에 일부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조례로

-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첨단산업”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산업인 “전략산업”으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전략산업 육성에 따른 인력양성과 과학기술진흥시책 수립·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과학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본 조례안은 일부 시·도에서 「전략산업육성 조례」와 「과학기술진흥 조례」로 각각 시행되고 있는 조례를 우리 도에서는 하나로 통합하여 전부 개정조례안을 마련한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이나 의견이 있는지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조례 제 호

충청북도 첨단산업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첨단산업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전략산업을 집중육성 지원하고, 과학기술진흥시책 수립·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략산업”이라 함은 지역발전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지역 산업으로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산업을 말한다.
2. “지역연구개발사업”이라 함은 도지사가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이라 함은 「산업발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
4. “과학관”이라 함은 「과학관 육성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시설을 말한다.
5. “연구개발과제”라 함은 지역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선정한 과제를 말한다.
6. “연구기관”이라 함은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제2항의 적용대상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도가 출연한 연구기관을 말한다.

제3조(책임과 의무) ①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략산업 육성과 과학기술 시책을 중시하고 지역의 과학기술 혁신과 자체적인 연구개발 강화, 산·학·연·관 협력 증진, 인력양성 등 전략산업 육성 및 지역과학기술 진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①도지사는 제3조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다음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과학기술분야 시행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으로 본다.
 ③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④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련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전략산업 지원사업) ①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보조·출연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략산업 신기술 연구개발 사업 및 사업화 지원사업
 2.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의 실용화 지원사업
 3. 첨단기술, 첨단제품의 산업화 및 첨단 산업 정보화 지원사업
 4. 전략산업 관련 창업보육 및 인력양성 사업 지원
 5. 전략산업 관련 세미나, 해외 교류·시장 진출, 홍보 지원사업
 6. 전략산업 우수제품 품질인증제 운영 등 판매촉진 사업
 7. 전략산업 개발 단계별 평가·시험비용 지원
 8. 충청북도 전략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 사업
- ②도지사는 제1항에 규정된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별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제2항에 의한 위탁사업의 수행에 따른 소요경비를 협약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탁 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과학기술진흥사업) ①도지사는 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국가기관, 정부출연기관, 공공기관, 학계, 연구기관, 산업체 등과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사업
 2. 과학기술 인력양성 사업
 3. 과학기술 정보화 사업
 4. 과학기술 협력 국·내외 지원 사업
 5. 지식재산권 발굴 육성 사업
 6.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지원 사업
 7. 그 밖의 도지사가 과학기술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동사업 참여기관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과학기술문화 확산사업) ①도지사는 도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 증진과 과학기술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과학기술 관련 경진대회 및 지역 과학축전
 2. 과학기술 관련 국내·외 우수 전람회 및 전시회 개최
 3. 과학기술 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 및 생활과학교실 운영
 4. 과학관 등 과학문화 시설 확충
 5. 과학관 육성 및 지원 사업
 6. 그 밖의 과학문화 확산과 관련된 사업
- ②도지사는 제1항에 규정된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별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③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연구개발 지원 전담기관 지정·운영) ①도지사는 과학기술진흥 사업 및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유관기관에 연구개발지원 전담 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연구개발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에서 추진하는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지원

- 2. 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
 - 3. 연구개발사업의 연계·중복 조정
 - 4. 도내 연구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비전 제시 및 과학기술진흥 업무 지원
 - 5. 그 밖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③도지사는 제2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정기관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기타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 사업외 예산이 수반되는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설치)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진흥 시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

- 1. 전략산업육성 및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
- 2. 전략산업 육성의 선택과 변경,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 3. 연구개발 과제의 선정·공모·평가에 대한 사항
- 4. 산업체와 기술협력, 공동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 5. 벤처기업 창업, 기술·경영·지원사항
- 6. 인력양성 시책 및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 7. 기타 전략산업 및 과학기술의 육성을 위한 주요사항 등

제1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도의 경제투자본부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 1. 과학기술 및 지역경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교수 및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 이상의 직에 있거나 과거 경력이 있는 자

2.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 그 밖에 과학기술 및 지역경제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④당연직위원은 당해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소집 등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전략산업팀장으로 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 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분과위원회) 위원회는 위원회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위원회 상정 안건을 검토하거나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산업정책 분과위원회

2. 과학기술진흥 분과위원회

3. 전략산업 인력양성 분과위원회

제15조(실비보상 등)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전략산업 지원사업과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평가 등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달리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포상) 도지사는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진흥 시책 추진과 관련된 분야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포상을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과 연도별시행계획은 이 조례에 의하여 수립된 것으로 본다.

관련 법령 발췌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 (지역전략산업의 선정 및 육성) ① 시·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구역의 시·군·구의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을 해당 시·도의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1. 국가의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에의 기여도가 높은 산업
2.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산업
3. 지역의 혁신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산업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 이상의 시·도지사는 공동으로 해당 2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전략산업을 선정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전략산업의 구조고도화 및 투자유치의 촉진에 관한 사항
2. 지역전략산업의 집적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지역전략산업의 발전 및 혁신을 위한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4.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산업입지기반시설 등의 확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산업발전법

제5조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선정)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중·장기산업 발

전 전망에 따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를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는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속도가 빠른 기술 및 제품을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1.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기여
2. 신규수요 및 부가가치 창출효과
3. 산업간 연관효과

□ 과학관 육성법

제6조 (등록) ① 과학관(국립과학관을 제외한다)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관의 시설·과학기술자료 및 전문 직원에 관한 등록요건을 갖추어 당해 과학관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설립계획의 승인을 얻어 설립한 사립과학관의 경우에는 준공후 지체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설립목적
2. 명칭
3. 소재지
4. 설립자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5. 시설명세서
6. 과학기술자료의 목록

7.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때에는 자체없이 신청인에게 과학관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과학관(이하 "등록과학관"이라 한다)이 제2항 각호의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 하여야 한다.

□ 과학기술 기본법

제4조 (국가 등의 책무와 과학기술인의 윤리) ①국가는 과학기술혁신과 이를 통한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과학기술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과학기술인은 경제와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과학기술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여 이 법의 기본 이념을 구현하고 과학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7조 (과학기술기본계획) ①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부장관은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과학기술관련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세우며,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과학기술의 발전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

1의2. 과학기술혁신관련 산업정책·인력정책 및 지역기술혁신정책 등의 추진방향

2. 과학기술투자의 확대

3.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추진 및 협동연구개발 촉진

3의2. 기업·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과학기술혁신역량의 강화

4. 연구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 촉진

5. 기초과학의 진흥

6. 과학기술교육의 다양화 및 질적 고도화,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 증진

7. 과학기술지식·정보자원의 확충·관리 및 유통체계의 구축

8. 지방과학기술의 진흥

9. 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

10. 남북간 과학기술 교류협력의 촉진

11.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촉진

12. 민간부문의 기술개발 촉진

1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중요사항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부장관은 매년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다음 해 시행계획 및 지난 해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학기술관련 계획을 세울 때에는 제1항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에 따라야 한다.

⑦ 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거나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교육·연구기관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법인·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① 정부는 지방의 과학기술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제9조제9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및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우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2. 과학기술기반구축의 지원
3. 지방과학기술진흥 성과의 확산 및 산업화 촉진
4. 지방의 과학기술인력·산업인력의 양성 및 과학기술정보유통체제 구축 등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지방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정부는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제9조제9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④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에 있는 대학·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는 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32조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육성) ①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가 출연하는 연구기관, 연구지원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등(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이라 한다)을 적극 육성하여야 한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연구회(이하 이 조에서 "연구회"라 한다)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평가결과는 연구회 제출한다.

□ 과학기술 기본법 시행령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과학기술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장이 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도록 다음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수립지침(이하 "시행계획수립지침"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매년 7월 31일까지 관계행정기관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과학기술부장관은 시행계획수립지침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관계행정기관장은 시행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의 시행계획을

세우고, 매년 10월 15일까지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매년 2월 15일까지 지난해의 추진실적을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제출받은 때에는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이를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매년 4월 30일까지 지난 해의 추진실적을 기획예산처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 삭제

⑥ 관계행정기관장은 확정된 시행계획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학기술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변경된 시행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시행계획 수립 등) 제5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지난 해 추진실적의 제출 보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기본계획"은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으로, "위원회"는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로 본다.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연구기관의 설립) ①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연구기관은 별표와 같다.
② 연구기관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연구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연구기관의 장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별 표] <개정 2006.12.26>

이 법에 의해서 설립되는 연구기관(제8조제1항)

기 관 명	
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1. 한국표준과학연구원
2.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2. 한국식품연구원
3. 한국천문연구원	13. 한국해양연구원
4.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4. 한국지질자원연구원
5.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5. 한국기계연구원
6. 한국한의학연구원	16. 한국항공우주연구원
7.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7.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8.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8. 한국전기연구원
9.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9. 한국화학연구원
10.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0. 한국원자력연구원